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  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실(시정본관 3층) 담당 김철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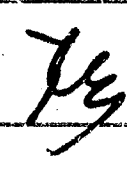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법무 11010-1504

시행일자 1996. 8. 10.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 장	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		
법 계 계 장			
기안	김철수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신청사건법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법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훈령안 각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훈령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법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41호. 끝.

# 서울특별시장

(제3안)

수신 신청사기획단장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종합청사건법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6. 8. 16.

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841호(생략)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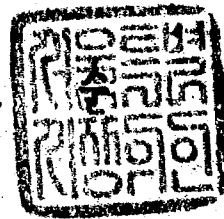
# 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5년 8월 16일

서울특별시장 조



# 서울特別市新廳舍建立諮問委員會規定中改正規定(案)

## 1. 개정이유

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하는 "시민자치전당"으로서 시청, 시의회, 시민광장이 한곳에 위치한 "시민센터"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민선시대에 걸맞게 시민과 전문가의 보다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구성원을 변경 및 보완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위원회 구성의 변경·보완(안 제3조)

(1) 위원 변경·보완 :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 
50인 →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 
포함 100인 이내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공립제어노

##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(안)

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 제1항중 "50인으로 한다"를 "100인 이내로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증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"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"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하고, 같은조 제2항중 "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"을 "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"으로한다. 제4조제2항중 "기획관리실장, 공보관, 감사실장"을 "공보관, 기술심의관, 기획관리실장, 감사실장, 환경관리실장, 교통관리실장"으로 한다.

[별표1] 및 [별표2]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

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